

202.78호

행정 명령

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
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

2020년 3월 7일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제202호 행정명령(Executive Order, EO)을 발령함에 따라,

뉴욕주에서 코로나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 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

따라서 오늘 저 **ANDREW M. CUOMO** 주지사는 주 비상사태 기간 모든 법령, 현지 법, 조례, 명령, 규칙, 규정의 준수가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,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,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기관의 모든 법령, 현지 법, 조례, 명령, 규칙, 규정, 또는 그 일부를 일시 정지 또는 수정하기 위해 행정부 법(Executive Law) 제2-B조 제29-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, 행정명령 202.66호 및 202.71호에 포함된 법률의 일시 중지 및 수정 조치를 2020년 12월 27일 일요일까지 30일간 더 지속합니다.

2020년 11월 27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

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.

주지사

주지사 비서